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2.1.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광주광역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에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추천기업
6.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7.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8. 전입기업
9. 수출관련기업
10.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11.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2. 명절·재해 자금 등
13. 기타 지원기업
14.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광주전남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을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 및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본 조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⑥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⑦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본 조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
-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부문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시설자금 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 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 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2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3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5. 창업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6.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점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 배정한도 감축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6. 7. 1.)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6. 7. 1일(2016. 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 기준에 따라 취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6. 29.)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7. 7. 1일(2017.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7. 8. 3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2017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광주전남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2018. 12. 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9. 8. 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9. 9. 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2019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20.12.21.>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4일(2021년 3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21. 6. 28.>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2021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22. 1. 24.>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2. 2. 3일(2022. 4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¹⁾
A1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영업개시후 3년 이내(단, 제조업의 경우 5년 이내)인 업체 제외 대상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도소매업(45~47),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을 영위하는 업체
A2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
A3	혁신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정부의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또는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획득한 업체 - 금융기관이 기술평가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중소기업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 인증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참여업체 - 관학계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업체
A4	녹색기업	- 환경부 선정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GR마크(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인증제품 생산업체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Green-Biz 기업
A6	추천기업 ²⁾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및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출취급은행 앞으로 추천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10~34)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³⁾ <세부분류: 부표1 참조>	- 음식료품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통신장비제조업, 조선산업, 디자인산업, 정보통신업, 문화영상산업 관련 서비스업, 관광산업

전산 코드	지원대상	선 정 기 준 ¹⁾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후 1년이상 경과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세부분류:부표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금형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광산업 및 관련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 중소기업부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광주광역시 선정 고용우수기업 o 전라남도로부터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2년 이내) 받고 있는 중소기업 o 대출취급월 현재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대출취급월 기준 12개월전 대비 5인 이상 혹은 10% 이상(단, 종업업수 2명 이상 증가에 한함) 순증한 중소기업 - (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가 인증한 공기산업관련 중소기업
A9	전 입 기 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중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생산·가동을 개시한 업체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10~34)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1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13	농림수산업관련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 천재지변, 대형업체부도 등으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본부장이 특별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
A15	기타 지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조선업(311), 해운업(501~502) o 음식·숙박업(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o 도소매업(45~47), 여행업(752), 운수업(49, 51~52) o 여가업(90~91). 단,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음

3) 광주전남지역 소재(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 기준) 중소기업에 한함

4)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 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지역특화산업 세부분류

업 종 별	대상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 10차 개정)		비 고
음식료품제조업	101 102 104 10742 10743 10792 11209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차류 가공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192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201 203 20412 20421 2049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섬유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 22212 22213 22222 22232 2225 2229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폴리스티렌 발포,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21 2322 2323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42 243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주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조선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포함)	
정보통신업	582 5911 59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방송통신업, 임대, 수리업 제외
디자인산업	7320	전문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제외
문화영상산업 관련 서비스업	90110 9019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관 제외
관광산업		「관광진흥법」 제4조 ~ 제6조에 따라 지정,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고 아래의 관광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 ○ 여행업(국외여행업 제외) ○ 호텔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지역전략산업 세부분류

업종별	대상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 10차 개정)		비 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2592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전자부품 제조업	261 262 28111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동기 제조업 중 가전용 모터 제조업																																						
금형산업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303 30400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광산업 및 관련산업	빛을 만들고 제어하며,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 부품, 기기 및 시스템 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범 위</th> <th style="width: 50%;">주 요 품 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통신</td> <td>광미디어</td> <td>광섬유</td> </tr> <tr> <td>광통신부품</td> <td>광커넥터, ONU, 광증폭기, 송수신기</td> </tr> <tr> <td>광통신 시스템</td> <td>광전송시스템, 광교환기</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정보 기기</td> <td>광기록 부품</td> <td>광픽업, 광다이오드</td> </tr> <tr> <td>광기록 매체</td> <td>MOD, DVD, CD-ROM</td> </tr> <tr> <td>광입출력 장치</td> <td>스캐너, 레이저 프린터</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정밀 기기</td> <td>레이저 발생기기</td> <td>산업용 레이저, 레저용 레이저</td> </tr> <tr> <td>정밀기공</td> <td>절단·용접기, 마킹, 반도체 가공기</td> </tr> <tr> <td>광계측기기</td> <td>광센서, 광계측기기</td> </tr> <tr> <td>의료광학기기</td> <td>레이저응용 치료기, 영상진단기</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광원 응용</td> <td>광원</td> <td>산업용 광원, 고효율 광원</td> </tr> <tr> <td>광변환기기</td> <td>태양전지, CCD</td> </tr> <tr> <td>디스플레이 소자</td> <td>LCD, FED, PDP, LED</td> </tr> <tr> <td>광소재</td> <td>광소재</td> <td>렌즈재료, 광섬유재료, 광촉매</td> </tr> </tbody> </table>				범 위	주 요 품 목	광통신	광미디어	광섬유	광통신부품	광커넥터, ONU, 광증폭기, 송수신기	광통신 시스템	광전송시스템, 광교환기	광정보 기기	광기록 부품	광픽업, 광다이오드	광기록 매체	MOD, DVD, CD-ROM	광입출력 장치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광정밀 기기	레이저 발생기기	산업용 레이저, 레저용 레이저	정밀기공	절단·용접기, 마킹, 반도체 가공기	광계측기기	광센서, 광계측기기	의료광학기기	레이저응용 치료기, 영상진단기	광원 응용	광원	산업용 광원, 고효율 광원	광변환기기	태양전지, CCD	디스플레이 소자	LCD, FED, PDP, LED	광소재	광소재	렌즈재료, 광섬유재료, 광촉매	
		범 위	주 요 품 목																																					
	광통신	광미디어	광섬유																																					
		광통신부품	광커넥터, ONU, 광증폭기, 송수신기																																					
		광통신 시스템	광전송시스템, 광교환기																																					
	광정보 기기	광기록 부품	광픽업, 광다이오드																																					
		광기록 매체	MOD, DVD, CD-ROM																																					
		광입출력 장치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광정밀 기기	레이저 발생기기	산업용 레이저, 레저용 레이저																																					
		정밀기공	절단·용접기, 마킹, 반도체 가공기																																					
		광계측기기	광센서, 광계측기기																																					
		의료광학기기	레이저응용 치료기, 영상진단기																																					
	광원 응용	광원	산업용 광원, 고효율 광원																																					
		광변환기기	태양전지, CCD																																					
디스플레이 소자		LCD, FED, PDP, LED																																						
광소재	광소재	렌즈재료, 광섬유재료, 광촉매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풍력에너지를 모아서 저장, 변환 및 사용처에 보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o 태양열온수기, 집열판, 축열탱크, 열교환기, 풍력발전기,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등																																							

<별표2>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지원제외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제10차)
부 동 산 업	68 부동산업
주 점 업	5621 주점업
무 도 장	91291 무도장 운영업
도 박 장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 용 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안 마 업	96122 마사지업
금 융 관 련 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단위 :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 번호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신청 사유 ²⁾	지원 부분 ³⁾	지원부분 여 부 ⁴⁾	신용 등급 ⁵⁾	업종 ⁶⁾	업체 소재지 ⁷⁾	업체명	사업자 구분 ⁸⁾	법인 등록번호 ⁹⁾	사업자 등록번호 ¹⁰⁾	대표자 성명	자금 구분 ¹¹⁾	취급 접포명	취급점 소재지 ⁷⁾	대출일 ¹²⁾	만기일 ¹³⁾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¹⁴⁾	채권 보전 ¹⁵⁾	

- 주 :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 3) 지원부분별 코드는 “한국은행△△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 4) 일반지원부분 해당시 “0”, 전략지원부분 해당시 “1”, 전략지원부분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분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2”, 특별지원부분 해당시 “3”, 특별지원부분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분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 로 기재
-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SOHO 대출은 “SOHO” 라고 표시
-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광주, 전남여수
-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 9) “-“ 생략, 법인사업자만 법인등록번호란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 10) “-“ 생략
-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 12) 신청사유가 “대환” 인 경우 대환일, “만기연장” 인 경우 실제 기한연장일을 기입
-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 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
- 15)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단위 : 백만원, 연%)

변동 전 보고내역							변동 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 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²⁾	변동 사유 ³⁾	변동사유 발생일 ⁴⁾	변동 처리일 ⁵⁾	변동 금액	변동 후 잔액	비고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 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귀하

아래 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출일 :
- 대출금액 :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